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종호 의원 외 7인

2. 제안이유

- 의장 ·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하며,
- 정견발표를 통하여 의장 ·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(안 제8조3항)
의장·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,
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로 변경
- 정견발표 허용(안 제8조제5항)
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선거 실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
- 선거 당일 정견발표 외 질의·토론 등 일체의 발언 금지 및 타 의원 지지·비방 발언 금지(안 제8조제6항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규칙안은

의장·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의 당선자 결정기준 변경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정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의장·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의장·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에서의 당선자를 현행 “연장자”를 “최다선의원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”로 변경하고,
- 해당 선거 실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, 이 경우 해당 선거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.
- 또한,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정견발표 외에 질의·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,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·비방하는 발언은 금지하도록 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제3항은 1995.1.1 제정된 것으로 제정당시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였으나,
- 그동안 지방의회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당선횟수도 많아지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을 다선의원으로 선정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 의장, 부의장 선거 시 정견발표를 통하여 보다 면밀히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